

서구 악취 저감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(대표발의: 백 일 권 의원)

의안 번호	51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3. 12. 18.

발 의 자: 백일권·정영수·이규근·
김한태·이동운 의원

1. 주문

- 가.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6조, 같은법 시행령 제56조,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『서구 악취 저감 대책 특별위원회』를 구성한다.
- 나. 특별위원회 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.
- 다.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- 가. 서구 아파트 재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로 도시환경의 관심이 증대되는 만큼 대구염색산업단지,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, 상리위생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구민 민원이 증대되고 있음
- 나. 서구 악취의 근원인 대구염색산업단지,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, 상리위생처리장 등의 이전과 악취 피해를 호소하는 구민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은 매우 미온적임.
- 다. 서구의회와 서구청이 함께 서구 악취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여 악취로 고통받는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, 선진 악취 저감 대책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서구 악취 개선을 위한 ‘서구 악취 저감 대책 특별위원회’를 구성하고자 함

3. 관계법령

- 가. 지방자치법 제64조
- 나.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

[지방자치법]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

-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 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[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]

제7조(특별위원회)

-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-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·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